**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**

 주식회사 센트랄(이하 “갑”)과 주식회사 센트랄 씨엠에스(이하 “을”)는 을의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부문(이하 “분할합병 대상사업”)을 을로부터 물적분할하고, 그 분할된 부분을 갑이 흡수합병하여 갑과 을 모두를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분할합병(이하 “본건 분할합병”)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할합병 계약(이하 “본건 분할합병계약”)을 2023년 1월 25일 체결하였습니다. 또한, 갑의 경우는 2023년 2월 24일에, 을의 경우는 2023년 2월 27일에 각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의 본건 분할합병을 승인하여 갑이 을의 분할합병 대상사업과 관련된 권리, 의무의 일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
 본건 분할합병 중 분할은 을이 본건 분할합병으로 갑이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 방식인 바 별도의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아니하고, 갑 및 위 분할합병 대상사업 간 합의한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분할합병비율은 1:1.4517131입니다.

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하여, 갑은 본건 분할합병에 따라 을의 채무 중 분할합병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본건 분할합병계약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하고, 그 밖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을은 갑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.

 이에,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.

1. 채권자 이의제출

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들께서는 본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(1)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: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

 (2)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: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합산업단지로 68-26

 (055-530-5612)

주식회사 센트랄 씨엠에스

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합산업단지로 68-26

대표이사 윤용호, 이호영